

관광사업등록신청서			처리기간	
			관광호텔 : 17일 관광객이용시설업 : 7일 (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17일)	
신청인	① 성명(대표자)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		
④ 상호 또는 명칭				
⑤ 업종				
⑥ 영업장 소재지				
⑦ 자본금				
⑧ 영업개시예정연월일				
관광사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 19 . . . 신청인 ㉠ 시·도지사 귀하				
가. 구비서류(관광숙박업인 경우)			수수료(매객실당:700원. 다만, 청소년호텔업은 매객실당 500원)(본란이 부족할시에 이면에 첨부)	
1. 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임원)의 신원증명서 1통				
2. 평면도 3. 숙박시설일람표[별표 3]				
4. 업종별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				
5. 부동산등기부등본(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.)				
6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등본				
나. 구비서류(관광객이용 시설업인 경우)			수수료 : 업종별 10,000원 (본란이 부족할 시에 이면에 첨부)	
1. 신청인(법인의 경우에는 임원)의 신원증명서 1통				
2. 시설에 대한 사진				
3. 평면도 및 배치도(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 한한다)				
4.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감찰사본				
5. 판매품목명세서(관광기념품 판매업에 한함)				
6. 법인 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				
7. 부동산등기부등본(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에 한하며, 당해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도 포함할 것)				
8. 건물 등기부등본(골프장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에 한하며, 건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할 것)				